

이사회 규정

한세엠케이 주식회사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제 2 조【적용범위】

제 3 조【권한】

제 2 장 구 성

제 4 조【구성】

제 5 조【의장】

제 6 조【자료제출 요구권 등】

제 3 장 회 의

제 7 조【종류】

제 8 조【소집권자】

제 9 조【소집절차】

제 10 조【결의방법】

제 11 조【질서유지】

제 4 장 부의사항

제 12 조【부의사항】

제 5 장 위임

제 13 조【위임】

제 14 조【이사회 내 위원회】

제 6 장 기타사항

제 15 조【의사록】

제 16 조【간사】

제 17 조【사외이사의 업무수행 지원】

제 18 조【규정의 개폐】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세엠케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 3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이사에 대해 관련 업무의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고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
 3. 내부거래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지속가능위원회

제 5 조 [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의장의 임기는 해당 이사 임기 만료시 까지로 한다.
- ③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만약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아닌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이러한 순서에 의하여도 의장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집된 당해 이사회에서 이사들간의 협의로 정하기로 한다.

제 6 조【자료제출 요구권 등】

- ① 이사회는 부의된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임직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 7 조【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 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개최일을 정하여 소집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8 조【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5 조 제 2 항에서 정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늦어도 회의 전일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문서, 전자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0 조【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의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화 및 화상회의, 기타 유사한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이사회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이사회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소집 통지는 아니할 수 있다.

제 11 조【질서유지】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의 발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4 장 부의사항

제 12 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재무제표의 승인

5) 정관의정관의 변경

6) 자본의자본의 감소

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1)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2)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4)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6) 이사의 보수

17)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서의 보고

- 18) 법정준비금의 감액
- 19)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 6) 공동대표의 결정
-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8)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11)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제·개정 및 폐지 등
-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투자에 관한 사항
-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4) 결손의 처분
-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 6) 신주의 발행
-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8) 준비금의 자본전입
- 9) 전환사채의 발행
-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에 관한 사항

-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및 자산의 이용 승인
- 2)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 3)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및 공동대표의 결정
- 4) 이사의 직위, 직무의 위촉과 해촉

5. 기타사항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5 장 위 임

제 13 조【위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각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사항 중 일부를 각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6 장 기타사항

제 15 조【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 16 조【간사】

-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사회 사무전반을 관리한다.

제 17 조【사외이사의 업무수행 지원】

- ① 사외이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 또는 외부감사인, 법률고문 등의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②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 1 항에 정한 지원 또는 자문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8 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